

영국편

이름을 써서는 안될 사람들

-신문 평의회 사례-

I. 가정재판소내의 소년

소년법에 의하면 신문은 가정재판소의 재판보도에 있어 재판의 대상 또는 증인으로 나온 소년의 이름, 주소, 학교 기타 신원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서는 안되며 그 소년의 사진을 찍어서도 안된다. 신원을 밝히는데 대한 금지는 법정 또는 대토이, 재판의 성질상 신원을 밝혀야 할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 한해 완화되며 이 경우에도 명령이 指定하는 한도내에 한한다. 평의회는 소년의 성명공표제한은 정신에 관해서나 문언에 관해서나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두고 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도난사건이 있는 2일 후 가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던 소년의 이름과 학교명을 공표했을 때 평의회는 이것이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1959년).

다음해 평의회는 「하로우 · 옹저버 · 앤드 · 가제트」가 가정재판소에서 취급된 사건기사에 소년의 신원을 추지하기에 충분하고 세밀한 사항을 썼으나 이름을 쓰지 않은 예 비추어 항의를 각하였다. 확실한 이름을 쓴 것은 아니었지만 평의회는 이 기회에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뜻에서 주의하도록 편집자에게 요망했다(1960년).

몇 년 뒤 어느 아버지로부터 「그로-리 · 쿠리아」의 기사가 아들의 고용주 이름을 써 신원이 밝혀졌기 때문에 누이동생이 학교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제소했다. 평의회는, 신문이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판정했다.

II. 가정 재판소 이외의 법정에 나온 소년

소년이 가정재판소 이외의 법정에 관계하는 경우, 법정이 금하지 않는 한 신문이 그 이름을 내는 것도, 그 밖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내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편집자가, 법정의 명령이 없더라도 이름을 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상류사회 출신의 젊은 부인경관이 아이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을 때 일부의 신문에 부녀폭행의 기사가 난 것을 보고 평의회에 주의를 독촉하여 이 문제가 주목의 대상이 된 일이 있다. 희생자가 14살의 소녀였는데 이름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 법정은 소녀의 이름이나 주소를 내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만일 이 소녀가 법정재판소에 나와 있었더라면 이층을 내는 것을 금지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소녀의 이름을 낸 신문의 편집자는 일반적으로서는 아이의 이름을 내서 고충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발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정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평의회는 신문聯合통신사에 대해 이런 류의 사진보도를 할 때의 방식을 알려 주도록 요구했다. 통신회의 답변에 의하면, 재판은 소년의 이름이나 주소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쓰지 말도록 명령하지 않고

있는데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통신사는 각 편집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일임해 놓고 있다.

평의회는 문제를 내무상에게 이관하여 이 불규칙한 사태에 주위를 환기시켰다. 실명보도에 대한 보호는 소년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만일 그것 때문에 이름을 세상에 내 놓지 않는 것이라면 보호가 재판이 행해지는 법정에 의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가정재판소 이외에서는 재판관이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소년의 이름을 기사화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하는 수속절차가 없다. 때로는 결정이 늦어져 조판에 이름을 내는 것을 저지할 수 없는 때도 있다.

이 문제가 전혀 법정의 눈에 띄지 않고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 일이 있다. 평의회는 내무상에 대해 가정재판소 이외에서 재판이 행해질 때에는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소년의 이름을 내도 좋은지 안 좋은지에 관해 지시하는 일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무상은 연소한 증인을 보호하고 기자가 신원에 관한 것을 쓸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의 힘을 가급적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찬성했다. 내무상은 경찰의 간부와도 이 문제에 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1955년). 1956년 초 내무상은 평의회에 대해 고재사무관, 경찰부장, 순회재판소서기관 등과 연락, 가정재판소 이외의 재판에 청소년이 관계하고 있는 경우 법정은 심판초에 신원에 관한 발표를 금지하는 지시를 하는데 유의하도록 역설했다고 보고했다. 사람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재판소 사무관은, 재판관이 관계청소년의 성명발표금지 지시를 내렸는지의 여부를 증언으로서 넣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가정재판소 이외의 재판보도에서 신문이 관계청소년의 이름을 낼 것인가 아닌가를 지시하는 것은 법정의 책임으로 되었다. 법정이 사실을 검토하여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으면 신문이 소년의 이름을 내도 법률위반이 되지 않으며 평의회는 비판을 받을 일도 안된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이름을 내는 것을 보류해도 문제는 없다. 신문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든가 결과를 걱정한다든가 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텐데 무심코 소년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런던의 「이브닝 뉴스」는 골목길에 끌려들어가 폭행당한 17세 이하의 소녀의 이름 나이, 주소를 범인이 잡힌 뒤 발표한 일이 있다. 평의회는 사정을 잘 몰랐고 부녀폭행이라는 죄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편집장의 설명을 받아들여 성범죄에 관련된 청소년의 이름에 대해서는 신중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III. 소년에 관한 기타의 예

법정과 관계가 없는 신문기사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많다. 다음의 두가지 예에서는 소년의 이름이 게재되었으나 직접적인 결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아이가 어려서 자신에 관한 기사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지만 보도는 악취미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름을 보도했기 때문에 장래의 생활을 손해볼 우려가 있었다.

(가) 죽음의 선고를 받은 소녀

「데일리·매일」은 6세의 소녀를 의사가 좀처럼 없는 혈액의 질병으로 10세 이전에 죽을 것이라고 진단한 사실을 사진까지 곁들여 기사화하면서 이름, 나이, 학교까지 밝혔다. 편집장은 변명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전문의간호부로서 기사게재에 동의하고 기사가 게재된 같은 날 딸을 TV에 출연까지 시켰다고 말했다. 평의회는 무정한 기사와 진실을 냈다는 이유로 신문을 견책했으나 편집장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데 대해서는 이를 환영했다. (1962년)

(나) 아버지가 없는 아이의 신원

「선데이·빅토리얼」의 기사가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하여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고 썼다. 그것 때문에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학교의 급우들에게 알려졌다. 편집장은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기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아이를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불리게 하여 고통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밝힌 신문을 비난하자, 편집장은 기사가운데 아버지가 없다는 의미가 나와 있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의회의 의경으로서는 그 외에 다른 의미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V. 이름을 내서는 안될 성인들

평의회는 성인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발표해서는 안될 경우가 있다고 제정하고 있다.

(가) 상습범

인생의 3분의 2를 감옥에서 보낸 남자가 10년 동안 착실한 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피플」지에 이를 기사화해 주도록 부탁하면서 이름만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와의談話を 기사화 했으며 이와 함께 이 남자가 개를 연에 놓고 적은 큰 사진을 게재했다. 편집장은 사진이 10년 전의 것이고 그 남자나 개도 옛날과의 모습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상습범」의 사진을 낸 것은 신뢰를 배신한 처사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체가 알려져 이 기사에 감격한 독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선물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1964년).

(나) 수석재판관의 비난

형사공소재판소는 한 남자에게 예방구금을 형사언도 하려 했으나 원래의 고용주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확신되므로 다시 한번 고용해 보겠다고 신청을 해와 보호관찰로 바꾸었다. 이 남자가 출소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기자가 보았다. 기자는 이남자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전과 6범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기분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로 인해 그 남자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 그곳에서는 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공장을 옮기고 말았다. 수석재판관은 기자를 심하게 꾸짖고 기자가 한 짓은 넘어진 사람을 짓밟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법정은 이번만은 기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으나 신문계가 이러한 일을 두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보증할 것을 희망한다고 수석재판관은 경고했다. 평의회는 수석재판관의 담화를 확인하고 이를 회람시켰으며 수석재판관은 이번 일은 예외로서 신문계와의 교섭의 경험에는 만족하다는 감사장을 평의회에 제출했다. (1959 년)

(다) 발표금지된 이름의 게재

형사범과 사이가 좋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형사공소재판소의 형사가 그녀의 이름을 내지 않도록 했으나 「요크셔 ·포스터」지가 이를 기사화했다. 그 결과 신문이 이 아가씨에 의해 남자가 재생활 기회와 두 사람의 장래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진정이 나왔다. 두 남녀는 남자가 강도사건의 한패가 되기 직전에 알게 되었는데 강도사건으로 남자는 10년 징역의 판결을 받았다. 아가씨는 남자를 설득, 자수시켰으며 형사공소재판소는 아가씨가 이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기에 형을 반감시켜 주었다. 신문은 재판기사에서는 아가씨의 이름을 비밀로 했으나 다음날 「하키-여자선수, 죄인과 연애」라는 제목으로 이름, 직업, 스포츠성적, 아버지의 직업까지 밝히는 기사를 썼다. 「요크셔 ·포스터」지는 기사에 대한 항의문을 게재하면서 판사는 아가씨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름을 쓰지 말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집자주」를 달았다. 평의회는 판정속에서 이런 류의 기사에는 이름을 내지 않으면 대중의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신문이 신원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사항, 즉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업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낸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평의회는 「요크셔 ·포스터」지의 행동을 견책했으나 기사를 비난하는 투서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1962 년)

(라) 폭행 피해자의 성명보도

3인의 부인을 폭행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려던 한 남자가 기소되었다. 「더 · 타임즈」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게재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남편은 공소를 제기했다. 피해자인 부인의 이들을 게재한다고 해서 조금도 공익을 위한 일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헛수고가 되어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다. 편집장은 법정이 이름을 내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때지만 이 경우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결코 이름을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인정, 부인의 남편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냈다. 평의회는 부인의 이름과 주소를 낸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하고 편집장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을 인정했다(1966 년).

(마) 신원이 밝혀져 자살

한 청년이 어떤 유부녀와의 정사끝에 자살하여 시체에 대한 검사가 행해졌다. 증인은 부인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지만 그 지방신문의 기자는 이를 쓰지 않았다. 검사관이 부인의 이름을 내지 않도록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 부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버어밍엄의 「선데이 머큐리」지 기자가 취재차 찾아왔다. 부인은 기자에 대해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므로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러나 『6세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 잊을려고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부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죽은 청년에 대한

검시과정까지 소상하게 소개되었다. 이 기사 때문에 부인은 자살하고 말았다. 편집장은 이 기사가 게재될 당시 휴가중이었으나 부인으로서의 신문기자와 대화하면서 그 내용이 기사화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후 이러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기사를 내지 않았어야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의회는 검시관으로부터 이름을 내지 않도록 요청이 있었는데도 신문이 부인의 이름을 밝힌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단정했다. 부인을 찾아 새로 이사간 집까지 찾아간 것도 잘못이며 기사를 낸 것은 윤리기준에 현저하게 반하므로 더 가혹한 견책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1959 년)

V. 죄가 없는 친족

평의회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또 하나의 유형은 죄도 없는 범죄인의 친족이 아무런 필요도 없이 기사에 이름이 밝혀지는 경우이다.

(가) 이름이 알려진 결과

살인으로 유죄가 되었으나 젊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언도된 남자의 누이가 제소했다. 석방일이 가까와지자 「선데이 · 디스퍼치」지의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 남자의 누이를 찾았다. 누이는 두 아이가 인근의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남동생이 가까운 시일 안에 석방될 것이라고 쓰고 누이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 이 기사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고 다른 신문에서 취재하러 오기도 하고 전화가 걸려 오기도 했다. (크로이든 · 타임즈」지에도 기사화되어 누이의 주소 외에도 외국에 갔다가 후에 영국에 들어온 양친의 주소까지도 보도했다. 「선데이 · 디스퍼치」지의 편집장은 할말이 없다고 누이에게 사과했다.

「크로이든 · 타임즈」지의 편집장은 평의회에 대해 주민들이 지방지에는 대신문보다도 그 지방에 관해 상세한 기사가 나온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한 것이며 친족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렸다.

(ㄱ) 유죄가 된 살인범의 석방은 공중의 관심사이긴 하나 보도에 있어 편집자는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는 친족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ㄴ) 지방지가 양친의 주소를 번 것은 더욱 나쁘다. 지방주민이 지방지에는 상세한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신문사측의 이유설명은 전혀 변호의 여지가 없다.

(ㄷ) 양지 모두 친족들을 못살게 굴고 그 기분을 무정하게 짓밟고 무시했다. (1961 년)

(나) 필요없는 사람에게 손상을 주는 보도

「런던」의 「이브닝 · 뉴스」지가 한 장의 사진을 냈더니 「품격 없는 괴씸한」 보도라고 진정이 날라 들었다. 사진의 주인공은 남아프리카 수상 홀버트 박사를 사살한 영국태생 남자의 딸로서 그의 아버지의 자사기사와 함께 게재되 있다. 기사에는 딸이 미국에 건너가 결혼한 사실과 함께 남편의 이름까지 밝혀져 있었다. 편집장은 신문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옛이야기를 되돌아보고 기사화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신문이 자살한

사람의 딸의 사진을 사망기사에 곁들여 결혼 이야기며 상대방의 이름까지 내는 것은 필요없는 일이며 사람을 손상케 하는 보도라고 판정했다. (1962 년)

(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관과 국회의원

「데일리 · 익스프레스」와 「데일리 · 밀러」는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이 국회의원의 친족이라고 써 「저속한 저널리즘」 이라고 비난받았다. 「데일리 · 밀러」의 편집장은 각각의 사건은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해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다른 일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데일리 · 익스프레스」의 편집장도 같은 의견으로 변호인인 사관이 공공연하게 피고의 가족관계를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는 것은 관련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죄를 지은 사람의 친족의 인적사항까지 쓰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판정했다. (1963 년)

VI. 사례-이름을 내도 무방한 사람

평의회는 특정상황아래에서 신문에 이름이 나왔어도 무방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 사례도 있다.

(가) 자진해서 출두한 경우

은행원을 사살한 남자의 처와 아기의 사진을 런던의 「이브닝 · 뉴스」가 법정기사에 곁들여 보도했다. 편집장은 그 남자의 처는 공공연히 법정에 나와 남편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자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사진의 게재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신문에는 있었기 때문이다. (1962 년) 평의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평의회는 몇 가지의 실례에 관해, 형사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으나 이 경우 죄가 중대하므로 그 정도의 이름을 게재한 데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1963 년)

(나) 공개경매의 매주

공개경매에서 실물을 사고 정체를 밝히지 않는 사람이 많다. 대리인을 통해 사는 경우도 있고 경매인과 교섭하여 이름을 공표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신문이 이런 사람의 신원을 알았을 경우 매주買 발표를 허가 받는 일이 윤리상의 의무인가? 일찌기 유명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갖고 있던 집을 산 사람이 이 문제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평의회가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집을 산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했으나 신문에 이름이 나고 말았다. 이름을 내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자나 경매인으로서의 분별 있는 방법에는 반하는 것으로 매주측이 비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편집자는 일찌기 유명인소유의 자산을 산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공중의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적인 매매이므로 사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주는 자신의 이름을 비밀에 붙일 권리가 있긴 하나 신문에도 가급적 이름을 알리고 하는 같은 권리가 있다. 평의회는 이 상황아래서는 이름을 알려지지 않게 할 권리는 없다고 결정했으나 만일 매주의 이름을 부당한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면 진정을 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965 년)

(다) 간첩의 아버지

「이브닝 · 스탠다드」는 외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영국인의 아버지 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양친에게 심한 고통과 굴욕감을 준 것으로서 이 경우 아버지는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에게 비판을 가한 결과가 되었으며 목사전체에 대한 공격을 노린 것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나왔다. 편집장은 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간첩활동을 한 인간의 전반적인 배경은 양친이나 그가 커온 과정을 포함하여 널리,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몇 가지의 실례에 관해 형사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해왔으나 이 경우 죄가 중대하므로 그 정도의 이름을 게재한 데 대하여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1963 년)